

「2023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0호(2023.2.3.)에 따라 2023. 6. 10.(토) 시행하는 「2023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 일시

시험 일시	직 급	직렬(직류)	비 고
6. 10.(토) 10:00~11:40 (100분)	8급	간호, 보건진료	09:20까지 입실 완료
	9급	일반행정, 지방세, 전산, 사회복지, 사서, 속기,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일반농업, 축산, 산림자원, 조경, 일반수산, 보건, 의료기술, 일반환경,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방재안전, 통신기술	

※ 편의지원 대상 중 시간연장(1.5배) 시험실의 시험시간은 150분(10:00~12:30)입니다.

2. 시험 장소

구 분	시 험 장 소	임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창원지역 (18개 학교)	경남관광고등학교, 남산중학교, 팔룡중학교, 창원공업고등학교, 안남중학교, 창신중학교, 창원남중학교, 삼계중학교, 창원상남중학교, 마산동중학교, 마산서중학교, 광려중학교, 한일여자고등학교, 마산제일여자중학교, 마산공업고등학교, 마산무학여자중학교, 진해냉천중학교, 동진중학교	도일괄,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도의회일괄, 경상남도의회, 거제시의회, 창녕군의회, 고성군의회, 합천군의회
진주지역 (8개 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진명여자중학교, 진주동중학교, 삼현여자중학교, 진주동명중학교, 진주중앙중학교,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진주봉원중학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의회, 함양군의회, 거창군의회
김해지역 (7개 학교)	내덕중학교, 대청중학교, 수남중학교, 월산중학교, 분성중학교, 진영중학교, 김해삼계중학교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밀양시의회, 양산시의회

- ※ 응시자는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하며, 타 시험장(학교)에서는 절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붙임1] '2023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안내'를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확인하시고,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장과 일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임용기관, 응시직류 및 장애편의지원 대상자에 따라 시험장소가 **창원·진주·김해지역**으로 구분되므로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도 일괄** 모집직렬(장애, 저소득) 응시자의 시험장소는 **창원지역 시험장**이니, 본인의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번 필기시험 과목 중 **경상남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이 포함된 직렬(축산, 조경, 일반수산, 의료기술, 도시계획)** 응시자의 시험장소는 **창원 상남중학교**입니다.
- ※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 대상자의 시험장소는 창원 남산중학교**이며(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 자세한 내용은 [붙임2] '2023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대상 결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7. 6.(목)** 경상남도 홈페이지 경남소식(시험정보란)
 - ※ 불합격자 개인별 성적 조회 : **2023. 7. 6.~2024. 12. 31.**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 전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10 이후 시험장 개방**)
- 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식수 및 화장지는 시험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 단,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편의지원 대상자의 경우, 시험시간 중 제한 없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계획 공고문(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0호)에 안내된 가산특전의 종류와 가점 비율을 확인하고,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가산점 등록기간 : 2023. 6. 10. ~ 6. 12.)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의사상자, 기술자격·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이며, 특히 미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필기시험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마.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5.19.(금)부터 출력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이후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결정문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스마트워치,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시험실에 소지하고 입실할 수는 있으나, **시험시간 중에는 몸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 장비와 전산기기는 반드시 **시험시작 전에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모자, 귀마개(소음방지용) 등 사용 희망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예고 시간 고지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등) 소지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점수산출은 전산기기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흑색펜, 적색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 하거나, 답안지 오염·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에도 전산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는 문제 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를 열람하였을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자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반드시 기재(표기)하여야 합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카.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이 표지의 과목순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 누락, 문제책 파손 등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 누락, 문제책 파손의 경우 시험 감독관에게 문제책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책 확인을 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타.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보기>와 같이 "●"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하.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거.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분합니다.

너.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참고1]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에 대하여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러. 이번 시험의 문제책 중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므로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으나, 아래 표의 과목 문제책은 경상남도에서 자체 출제한 과목으로 문제를 비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회수하므로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문제 비공개 시험과목 (시험 종료 후 회수)
가축사양, 가축육종,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수산일반, 수산경영, 해부생리학개론,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머. 이번 시험은 필기시험성적 사전공개를 시행하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3] '필기 시험성적 사전공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학교)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나.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합니다.
- ※ 신분 확인 시 마스크를 벗어 신분을 확인한 후 착용
- 다. 응시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라. **확진 및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신청 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gyeongnam.go.kr>)에 등록
- 사전신청 기간 : 2023. 6. 5.(월) ~ 6. 9.(금) 18:00까지

- ※ 단, 타지역에서 확진 및 자가격리가 된 경우 시험 여건에 따라 시험 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
- ※ 코로나19 격리 해제, 재택치료 기간종료, 완치된 응시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응시
- ※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방법은 **[참고2]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참고
- 마. 응시자는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붙임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라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 방역지침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가. 시험장(학교)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응시자 차량은 주차가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 시험장 전역(복도, 화장실 등)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특히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다. 시험장 출입 시 입구에 구비되어 있는 덧신을 착용한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의문 사항은 경남도청 인사과 채용담당(055-211-3521)으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1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제4호 위반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4호 관련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시험 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참 고 2 |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① 확진자 사전 신청

- 대 상 : **확진 및 자가격리자 중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자**
- 방 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gyeongnam.go.kr>)에서 **신청**
- 기 한 : 2023. 6. 5.(월) ~ 6. 9.(금) 18:00까지
- 신청확인 : 신청 후 경남도청 인사과 채용담당(☎055-211-3525)으로 신청내역 확인
- 문 의 : 경남도청 인사과 채용담당(☎055-211-3525)

② 응시대상 확인

- 별도시험장 위치 및 시험응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서접수시 등록된 응시자의 전화번호로 개별 안내** 예정

③ 시험장 이동

- 개인차량(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대중교통 이용 금지**)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시험장까지 최단거리로 이동**

④ 시험응시

- 확진된 응시자가 시험응시를 목적으로 외출하는 경우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별도시험장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 입실 및 시험 응시**
- 시험종료 후 개인차량(본인 또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귀가(**대중교통 이용 금지**)

※ 시험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